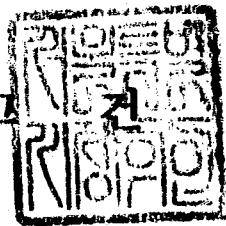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6급이하시보공무원수습규정

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9년 7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고



# 서울특별시6급이하시보공무원실부수습규정 폐지규정안

제안일자	1998. 11. 5	제 30 호
담당자	김석진	법무담당
이양복	이동진	박동보

## 1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6급이하시보공무원실부수습규정은 공무원이 별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행정 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, 시보공무원의 소속, 수습요령, 수습상황의 평정 및 환용 등을 규정하는 훈령이었으나, 서울특별시인사규칙의 개정으로 6급이하 시보공무원의 실부수습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, 훈령으로 존치되어온 본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26조의1 내지 제26조의3

제26조의1(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) 시보공무원 법제28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의 소속은 실부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과단위(담당관·실·소속기관의 부를 포함한다. 이하“과”라 한다.)부서로 하고, 수습 부서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.

제26조의2(수습요령)①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기타 당해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.

(이하생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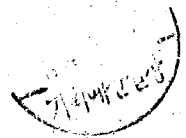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훈령 제 호

# 서울특별시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폐지규정안

서울특별시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서울특별시

우100-110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/ 전화 3707-9815~6 / 전송 3707-9829

처리부서: 교통운영개선기획단 단장: 김대호. 팀장: 임용택. 담당: 임종섭

문서번호 교운91110-//24

시행일자 1999. 1999. 7. 14

선 결	범무담당관	지 시	
접 수	일자 시간	199.7.16	결 재
	번호	1934	법제담당사무관
처리과		공 람	행정심판담당사무관
담당자			총무담당사무관
			법제심사담당사무관

수신 범무담당관

참조

## 제목 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폐지 의뢰

1. 서울특별시 훈령 제820호로 운영중인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이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도록 결정되었고 공사발주자 및 시공자가 공사장 주변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폐지의뢰 합니다.

따로붙임 : 1)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폐지규정안5부. 끝.

김대호  
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

문서번호	교운91110-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

#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규정 폐지

교통운영 개선기 획단	교통관리 실장	행정2부시장	시장
김대호	전결	/	나을수
참조	조직제도 담당관 김호성 법무담당관실 사원 소통개선팀장 임도영		

**결재**  
 1999. 7. 13  
 교통관리실장

No 246

## 교통관리실

(교통운영개선기획단)

# 서울특별시

우 100-744 서울특별시 중구 대방로1가 31번지 전화 (02) 731-6621 전승 731-6053  
 인사행정과(시정분권1층) 과장 문윤호, 사무관 유희태, 담당 오승주

문서번호 인사 12100-2652

시행일자 1998. 11. 11.

수신 법무담당관

참조

신 길	법무담당관 <b>오승주</b>		지 시	구 인 사 장 기 원 이 행 비
집	일자 시각	1998. 11. 11.	길 재	
수	번호	3392	· 공 합	
치 리 과				
답 방 자				

## 제목 서울특별시인사규칙 개정

1. 내무부 지공 12101-64('98. 2.20)호 및 행정자치부 운영 12100-459 ('98. 9.21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우리시의 조직개편 및 실·국별 책임경영제 도입·시행 등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인사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 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정을 폐지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,

3. 같은 사유로 자치구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준칙을 시달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.

가. 개정 규칙명 서울특별시인사규칙

나. 개정 근거

- 지방공무원법중 개정 법률('98. 9. 19. 법률 제5,568호)
  - 5급이상 기술직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정년연장 제도 폐지 (법 제66조 제4항)
-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('98. 2. 20. 대통령령 제15,645호)
  - 직무수행능력 우수자의 특별승진 대상기준을 규칙으로 위임 (영제38조의4제1항제2호)

- 공무원인용및시험시행규칙 개정 등 국가공무원 제도개선 내용과 균형있게 정비
- 실·국별 책임경영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정비·보완

붙임 1.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안 40부.

2. 서울특별시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칙개정규칙안 1부. 끝.

인 사 행 정 과 장

국윤호

# 서울특별시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정 폐지규정안

제정일자	1998. 11. 30	제정번호	30
담당자	이영복	협조기관	시보공무원
	이영복		백용남

## 1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정은 공무원이 될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행정 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, 시보공무원의 소속, 수습요령, 수습상황의 평정 및 환용 등을 규정하는 훈령이었으나, 서울특별시인사규칙의 개정으로 6급이하 시보공무원의 실무수습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, 훈령으로 존치되어온 동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26조의1 내지 제26조의3

제26조의1(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) 시보공무원 법제28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과단위(담당관·실·소속기관의 부를 포함한다. 이하“과”라 한다.)부서로 하고, 수습 부서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.

제26조의2(수습요령)①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기타 당해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.

(이하생략)



서울특별시훈령 제 호

## 서울특별시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정폐지규정안

서울특별시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